

우)110-07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-1, 301호(당주동, 영진빌딩) 전화 02)720-5004 /전송 02)723-5003

2015년도 온천종사자교육 통지

문서번호 : 온협15-201

2015. 4. 2

수 신 : 온천종사자(대표)

온천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·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5년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니 참석바랍니다. (대상지역 참석 곤란시 타지역 참석도 가능)

구분	일 시	대상지역	인원	세부장소	비고
1차	4월 22일(수)	서울, 경기, 강원	61	속초시청 대회의실(종합민원실5층) ∴ 속초 중앙로183(중앙동469-6)	
2차	5월 13일(수)	세종, 대전, 충청	175	유성구청 대회의실 ∴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(어은동 109)	
3차	6월 10일(수)	부산, 제주, 울산, 경남	131	부산 동래구청 회의실 ∴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(복천동)	
4차	9월 9일(수)	광주, 호남	43	광주광역시 5·18기념문화센터 ∴ 서구 내방로 152(쌍촌동 1268)	
5차	온천대축제 개막일	대구, 경북	89	울진군(세부장소 미정)	
6차	11월 11일(수)	1~5차 미수료자		구 충남도청 회의실(2층) ∴ 대전 중구 중앙로 101(선화동 287-2)	

내용

- 온천법(행자부)2시간, 온천운영(협회)1시간, 공중위생관리(지자체 위생담당)1시간
- 교육시간 : 14:00~18:00 [4시간], 매년 1회 참석
-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교육비 30,000원- 계좌입금 [신한은행 140-009-424040 (특)한국온천협회]
 ※2015년 협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합니다.

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



- 온천종사자: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, 숙박,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.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.(온천법 제2조,16조, 시행령 제17조)
-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.(온천법 제26조)
- 본교육을 받을 시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(목욕업, 숙박업)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.(온천법 제26조)
-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.(온천법 제26조, 시행규칙 제19조)
-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,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.
- ※ 교육 불참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온천법 제37조)